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6 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박정훈

우재준 • 장동혁 • 김태호

김기웅 · 김대식 · 조지연

고동진 • 정점식 • 박정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 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,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,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

로부터 보호하고자 함(안 제3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"을 "위하여"로,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	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		
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국	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		
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			
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			
보호하기 <u>위하여 필요하다고</u>	위하여		
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			
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			
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			
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			
필요한 조치를 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